

[1998. 12. 26]
[제82회 정기회]

1998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8년 12월 4일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12월 12일 회부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 12. 24) 상정·의결

2.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87,042,251천원

가. 일반회계	76,164,130천원
나. 특별회계	10,878,121천원
○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468,964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1,941,718천원
○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	4,467,168천원
○ 공동주택건설특별회계	271천원

3.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

가. 일반회계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98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합계	76,164,130	68,037,207	8,126,923		
세입	지방세수입	12,503,186	11,937,900	565,286	
	세외수입	17,572,522	14,672,914	2,899,608	
	경상적세외수입	8,308,855	6,912,278	1,396,577	
	임시적세외수입	9,263,667	7,760,636	1,503,031	
	지방교부세	500,000	-	500,000	
	조정교부금	23,383,305	25,162,000	△1,778,695	
	보조금	22,205,117	16,264,393	5,940,724	
	국고보조금	12,747,623	8,432,541	4,315,082	
	시비보조금	9,457,494	7,831,852	1,625,642	
	지방채	-	-	0	
세출	합계	76,164,130	68,037,207	8,126,923	
	경상예산	27,922,648	27,964,729	△42,081	
	사업예산	45,470,350	37,501,135	7,969,215	
	채무상환	388,483	388,483	0	
	예비비등	2,382,649	2,182,860	0	

가. 특별회계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98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합계	10,878,121	11,156,625	△278,504		
세입	지방세수입	-	-	-	
	세외수입	6,414,180	6,342,914	71,266	
	경상적세외수입	2,546,149	2,035,433	510,716	
	임시적세외수입	3,868,031	4,307,481	△439,450	
	조정교부금			△349,770	
	보조금	4,463,941	4,813,711	118,888	
	국고보조금	3,565,119	3,446,231	△468,658	
	시비보조금	898,822	1,367,480	-	
	지방채	-	-	-	
	합계	10,878,121	11,156,625	△278,504	
세출	경상예산	127,272	127,272	0	
	사업예산	10,725,126	10,999,090	△273,964	
	채무상환	-	-	-	
	예비비	25,723	30,263	△4,540	
	합계	10,878,121	11,156,625	△278,504	

다. 특징

- 세입분야에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세출분야에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구조정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경비와 그 동안 추가로 발생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필수경상비와 당면 현안 사업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

4. 1998년도 제2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별첨 1 참조

5.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없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구조 조정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경비와 그 동안 추가로 발생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필수경상비와 당면현안사업비 등 금년 중에 발생한 요소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집행부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편성과정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된 '98년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관한 의견입니다.

'98년도 본예산 편성시 서구청이 제출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224억 7,400만원이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 대비 33.7%(75억 8,100만원)가 증가한 300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41억 1,700만원(본예산 대비 18.30%)는 이미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과 대비하여 33.7%(지방세수입 : 4.74%, 세외수입 : 66.46%)라는 추계오차의 발생은 지방재정의 전망을 흐리게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재정총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차액을 빈번한 추경재원으로 삼아 재원의 소규모 분산배분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세입 추계오차

(단위 : 천원)

구 분	본예산액	제1회 추경예산액	제2회 추경예산안	본예산 대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율
지방세수입	11,937,900	11,937,900	12,503,186	565,286	4.74
세외수입	10,556,344	14,672,914	17,572,522	7,016,178	66.46
합 계	22,494,244	26,610,814	30,075,708	7,581,464	33.70

둘째,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부과 및 과목변경된 사업성 경비 등 행사성 경비가 전액 삭감된 경우도 있고, 서구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나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처럼 자체사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전액 삭감된 경우도 있습

니다. 이런 경우의 전액 삭감은 가득이나 어려운 구 채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만큼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이유가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출요소를 적시·적소에 반영하여 재원이 사장되어 유휴화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연내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일부 사업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냉·난방기 구입, PC단말장비 구입, 레이저프린터 구입, 전산교육장 빔 프로젝트 구입 등과 같은 신규 자체 사업들은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시기상·성격상, 또한 연도 내 그 집행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고려해 본다면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용배수로사업이나 하수도개설사업 등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추가편성이라는 점에서 추경편성 사유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우수제안시상금, 제세고지세 제작비, 소모품 구입, 유류대, 불법광고물 계고장 송달우편 요금 등은 정상적 경비로써 예산성립 전에 충분히 세출요소를 예상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신규 계상한 것은 추경 편성사유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